

디지털 인증의 현재와 미래



토스인증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모든 순간

토스 **방승익 실장**

본인확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본인확인기관으로써 고객의 연계정보 수집을 위한 연계정보(CI,DI)를 처리(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본인확인

「전자서명법」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전자서명



toss



-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설 인증서입니다
 - 본인확인기관(21년 8월)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21년 11월)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 중인 유일한 사설인증서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

- **2** 토스인증서 도입 기관 및 이용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유저 경험을 제공합니다
 - 기관: 간단한 절차, 체계적인 가이드, 빠른 이슈대응으로 7 영업일 내 서비스 연동 가능 / 이용자: 번거로운 다단계 인증 절차를 원터치로 한 번에 완료

- 3 토스인증서 하나로 금융/공공/일반 기관들의 모든 인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본인확인, 전자서명, 마이데이터통합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로그인에서부터 각종 동의문 서명까지 모든 인증 수요 커버 가능

-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설 인증서입니다
- 본인확인기관(21년 8월)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21년 11월)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 중인 유일한 사설인증서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

1. 사설인증서로는 유일하게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

토스인증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인증서입니다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제도

2021년 11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아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본인확인기관

2021년 8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저장 가능한 CI, DI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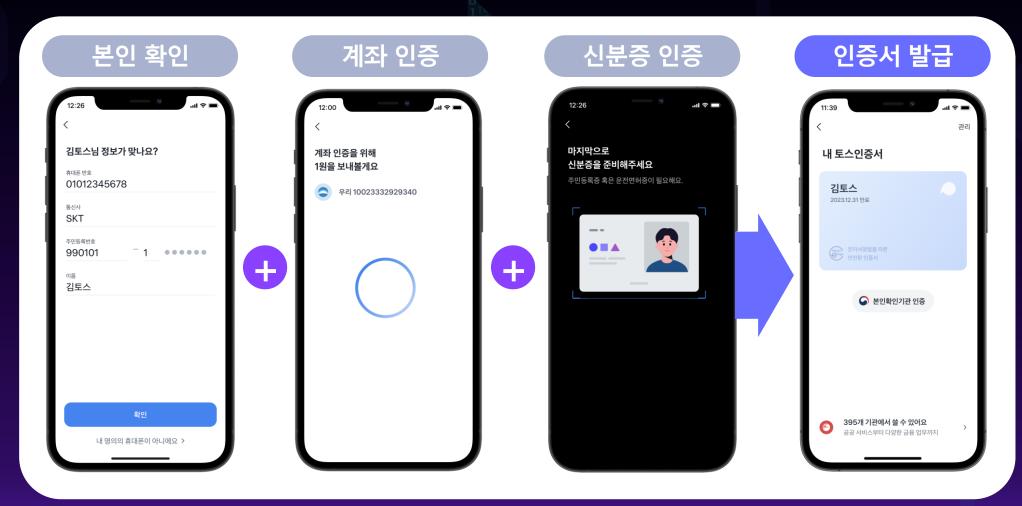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비대면 금융거래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통합 인증수단

2021년 12월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통합인증 제공

1. 사설인증서로는 유일하게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

토스인증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단계 거쳐 실지명의 등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1. 사설인증서로는 유일하게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

토스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자료: 김앤장 법률 의견서)

KIM & CHANG 김·장 법률사무소

F 02 737 9091/9092

lawkim@kimchang.com

2022년 5월 25일

수 신 :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참 조 : 김세진 변호사님

발 신: 이정민 / 문준호 변호사

제 목 : 토스인증서의 법적 효력 관련

위 제목 기재 건에 관한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문맥에 따라 "귀사" 또는 "토스")는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법상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았음

한편 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음.

귀사는 전자서명법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동법 시행령 제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을 수행하고 있음.

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등 업무("토스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귀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토스인중서")를 고객에게 발급할 때 동 인증서를 토스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

KIM & CHANG 김·장 번륭사무소

금법에 따른 접근매체로 즉시 등록하고 있음.

귀사는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사항을 질의하심,

- 가. 토스인증서를 귀사가 아닌 제3자인 금융회사 등이 전금법상 접근매체로 등 록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실지명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질의 1")
- 나. 법령상 서명이 필요한 경우, 토스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토스전자서명") 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질의2")
- 다. 토스전자서명의 이용자가 귀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 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3")

2. 질의1에 대한 검토의견

전금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하 "인증서등")를 접근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전금법 제2조 제10호). 즉, 이용자가 어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인증서등을 발급 받으면, 동 인증서등을 통해 전금법에서 정하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와의 전자금융거래(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계좌 이체, 추심이체 출금 동의, 신용카드 등 결제와 관계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 등)에 대해 거래지 시를 하는 등 거래를 수행할 수 있음

전금법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 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전금법 제6조 제1항),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전금 법 제6조 제2항 본문).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감독규정") 제34조 제3호는 "전 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

토스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업무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 업무 모두 수행 가능함 (구 공인인증서 사업자와 동일한 지위 보유)

본인확인서비스 기반의 본인인증 제공

이용기관이 필요한 경우 토스로부터 제공받은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정보(DI)는 저장 가능함 (일반 간편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CI는 저장 불가)

타 전자서명보다 안전하고 보안성 강함

구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타 전자서명보다 안전하고 보안성이 강한 전자서명을 발급・관리・이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 의견서의 요지는 가) 토스인증서의 권능을 고려할 때 전금법상 접근매체로 등록함에 있어 추가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 없음, 나) 법령상 규정하는 전자서명 모두에 사용할 수 있음, 다) 정보통신방법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출처: 김앤장 법률 의견서 (2022년 5월)

-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보으하고 있는 사설 인증서입니다
- 본인확인기관(21년 8월)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21년 11월) 라이벤스를 모두 보유 중인 유일한 사설인증서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

- <mark>2 토스인증서 도입 기관 및 이용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유저 경험을 제공합니다</mark>
 - 기관: 간단한 절차, 체계적인 가이드, 빠른 이슈대응으로 7 영업일 내 서비스 연동 가능 / 이용자: 번거로운 다단계 인증 절차를 원터치로 한 번에 완료

2. 이용기관/이용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유저 경험

원터치 인증: 인증 절차를 1~2 단계로 끝내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시] Mobile 토스 본인인증 프로세스



[이용기관] 서비스 사용 퍼널을 간소화할 수 있어 유저의 이탈율을 낮추고 전환율을 높임 [이용자] API 기반 연동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없이 PIN or 생체인증만으로 인증 절차 완료

Mobile

본인인증

인증 퍼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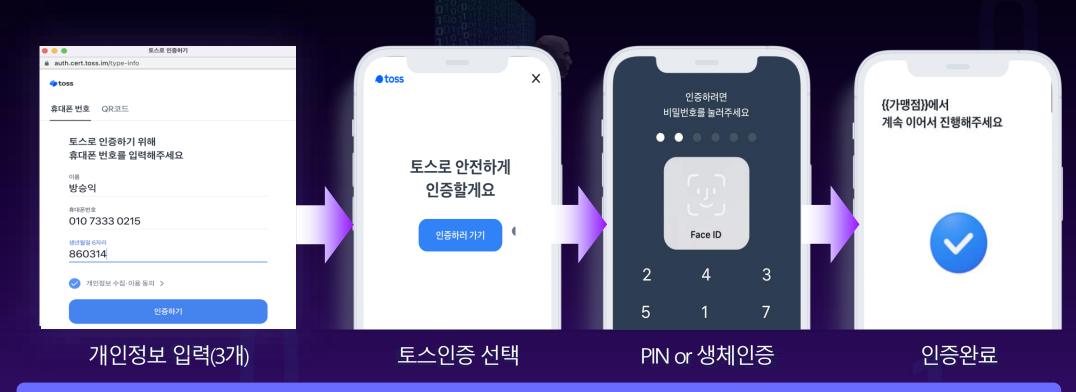
2. 이용기관/이용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유저 경험

Web 인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시] Web 토스 본인인증 프로세스



Web본인인증인증 퍼널



[이용기관] 서비스 사용 퍼널을 간소화할 수 있어 유저의 이탈율을 낮추고 전환율을 높임 [이용자] API 기반 연동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없이 PIN or 생체인증만으로 인증 절차 완료

-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보으하고 있는 사설 인증서입니다
- 본인확인기관(21년 8월)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21년 11월) 라이네스를 모두 보유 중인 유일한 사설인증서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

2 토스인증서 도입 기관 및 이용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유저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관: 간단한 절차, 체계적인 가이드, 빠른 이슈대응으로 7 영험왕, 계 서비한 연동 가능 / 이용자: 번거로운 다단계 인증 절차를 원터치로 한 번에 완료

- 토스인증서 하나로 금융/공공/일반 기관들의 모든 인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본인확인, 전자서명, 마이데이터통합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로그인에서부터 각종 동의문 서명까지 모든 인증 수요 커버 가능

3. 금융/공공/일반 영역 내 모든 인증 수요 충족

토스인증서 하나로 금융/공공/일반 영역 내 모든 인증 수요를 충족합니다



간편인증/본인확인



- 이용자 신원을 본인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저장 가능한** CI/DI**제공**
- 토스 본인인증은 **휴대폰 본인확인 및** 일반간편인증서비스를 포괄함



전자서명

- 각종 전자문서 및 전자계약서와 관련한 서명 기능 제공
- 계약등기록에 대한 **부인방지**, 약관등 내용확인에 대한 증빙으로사용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 기관을 위한 **통합인증 제공**

도입 사례

- 회원가입,로그인,가입조회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송금, 결제) 사용자 2차 인증
- 각종 본인확인
- 성인인증
-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등

- 계좌.증권 개설.비대면계좌개설등
- 각종 계약서/청구서 등 문서 전자서명
- 안내문,수취확인 등 문서 전자서명
- 금융(자동)이체 동의 (예: 예적금, 보험 등)
- 기부금자동이체동의
- 출금이체 동의
- 상품가입/권유에 대한 동의 등

• 기관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3. 금융/공공/일반 영역 내 모든 인증 수요 충족

특히 금융사들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요는 더욱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

계약체결

- 주택담보 대출계약
- 신용대출 계약

- 보험가입설계동의
- 보험계약

• 신용카드 발급

• 증권신탁계약

접근매체

• 계좌이체

• 계좌이체

-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 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
- 주식매매

- 추심이체 출금동의
- 대출원리금 납부
- 계좌설정

- 대출원리금 납부
- 계좌설정

- 카드대금 납부계좌 설정
- 선불전자 지급수단 충전
- 오픈뱅킹 서비스
- 계좌 설정

- 금소법상 고객확인
- 주택담보대출신청
- 신용대출신청

- 보험가입
- 보험대출신청

• 신용카드 신청

• 증권계좌 개설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에 따라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할 때 뿐만 아니라 설명 및 권유 시에도 날인 및 전자서명이 필요함

토스인증서가 탑재된 토스앱은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ISO/IEC 27001	 2017년 5월 취득 (2020년 4월 갱신 심사 완료)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하는 국제 표준 규격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접근 통제 등 정보보호 관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부여
PCI DSS Level 1	 2017년 12월 취득 글로벌 카드사 5개가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해 개발한 국제 보안 표준 규격 총 6개 영역 415개 세부 요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고 등급인 Level 1 취득
ISMS-P	 2022년 1월 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적합 여부를 102개 인증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사 후 인증
ISO/IEC 27701	 2020년 4월 취득 국제 표준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총 8개 분야, 49개의 관리 기준에 걸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취득

시큐업세미나2022

디지털 인증의 현재와 미래